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발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이렇게 운영합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79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부사업 정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함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활용

할당대상업체는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거나 거래시장에서 거래

* KOC(Korean Offset Credit)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실적 (1KOC=1tCO₂-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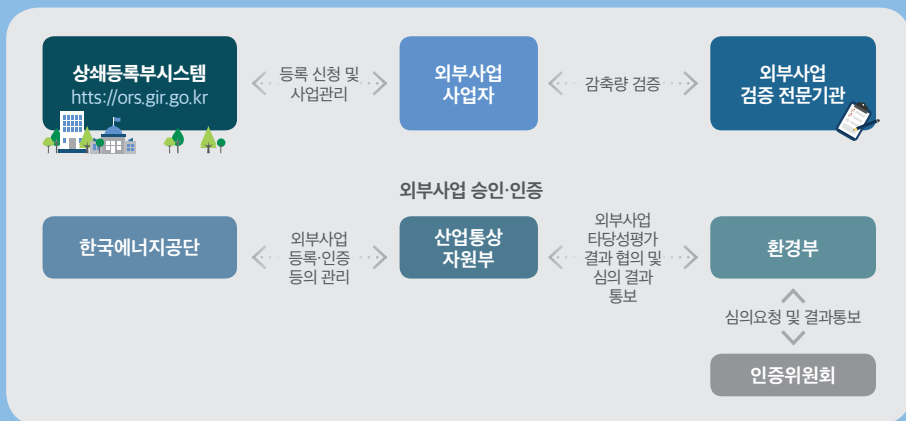
* KCU(Korean Credit Unit)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에 대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인정받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 외부사업 승인
- 방법론 승인 및 개정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승인

한국에너지공단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
- 감축량 인증 검토



외부사업 주요 개정

2018년 5월 2일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I 승인 대상의 확대

외부사업 지침 제8조(승인대상)의 외부사업 승인 대상 확대

⚠ 제8조(승인 대상)

제3항 2016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에 한해, 해당 사업의 잔여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전환 신청 할 수 있음



I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외부사업 지침 제9조(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료)의 외부사업 규모에 대한 기준인 외부사업 감축량 기준을 확대(*기존 소규모 감축사업 규모'600톤/년 →3,000톤/년' 확대)

⚠ 단일 감축사업

- 일반감축사업 3,000톤/년 초과
- 소규모 감축사업 100톤/년 초과 3,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감축사업 100톤/년 이하

⚠ 묶음 감축사업

- 소규모 감축사업 15,000톤/년 이하
- 극소규모 감축사업 500톤/년 이하

I 극소규모 감축사업

소규모 외부사업의 범위를 늘리고자, 연간 감축량 100톤 미만의 "극소규모 외부사업" 으로 추진 가능

⚠ 극소규모 감축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기간을 최대인증유효기간으로 확대

⚠ 상쇄등록부시스템(ORS)에 등록된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한글파일 극소규모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

I 프로그램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확대

⚠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총괄사업자에 의해 추진 가능

I 해외 외부사업 (국내기업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

⚠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 가능

프로그램 감축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정의와 외부사업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음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

* 외부사업 지침 제9조(승인대상 외부사업 규모 및 종류) 제4항

프로그램 감축사업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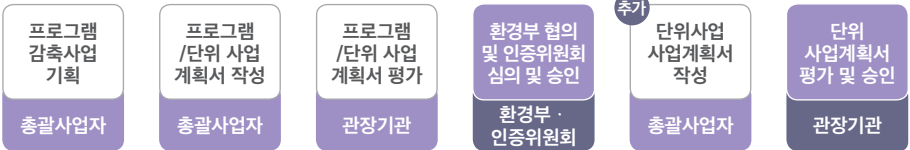
“프로그램 감축사업”은 단일, 묶음 감축사업과는 다른 고유의 특징을 지니며,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상쇄제도 외부사업으로 추진 가능

Key Point

- ⚠ 프로그램 감축사업 인증유효기간(총 28년)동안 단위사업을 상시적 추가 가능
- ⚠ 최초 승인 후 추가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음
- ⚠ 총괄사업자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등록 및 단위사업 등록/인증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체계적 관리

프로세스

프로그램 감축사업



최초 승인 후 추가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 심의 생략

단일감축사업



동일한 사업을 단일감축사업으로 추진시 동일한 사업 등록 프로세스를 매번 수행 필요

극소규모 감축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정의와 외부사업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음

I 극소규모 감축사업이란?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100톤 이하인 사업을 의미하며, 타당성 평가 시 완료된 평가 기준 적용

* 외부사업 지침 제9조(승인대상 외부사업 규모 및 종류) 제1항~제3항

I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주요 특징

“극소규모 감축사업”은 연간 100톤 이하의 감축사업을 관장기관의 장이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제출 가능하며, 타당성 평가 시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Key Point

- ⚠️ 연간 100톤 이하인 감축사업, 극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으로 신청 가능(연간 500톤 초과 불가)
- ⚠️ 극소규모 감축사업 모니터링 기간은 최대 인증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 중 1회 이상 모니터링)
- ⚠️ 사업계획서는 상쇄등록부시스템(ORS)에 등록된 별도의 양식(한글파일 극소규모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

주요 양식

총 5개의 사업 유형에 대해 극소규모 감축사업 추진가능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01A-001-Ver01

태양광 발전을 통한 계통 연계 사업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계통 연계 사업의 방법론
01B-001-Ver01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자가 사용 사업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자가 사용 사업의 방법론
01B-004-Ver01

고효율 설비 교체사업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
03A-004-Ver01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고효율 도로조명 설치사업의
방법론
03A-006-Ver01

“지속적으로 산업발전추진에 대한 다양한 극소규모 감축사업 유형 개발 예정”

외부사업 등록, 인증 및 방법론 승인 절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거 외부사업 등록, 인증 및 방법론에 대한 승인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절 차	수행주체
1단계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방법론 승인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2단계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방법론 승인 신청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검증결과 검토 및 방법론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검증결과 검토 및 방법론 검토 결과 통보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수정·보완)	외부사업 사업자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검증결과 검토 및 방법론 검토 완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협의	환경부
3단계	승인 및 인증 심의 요청	환경부
	승인 및 인증 심의	인증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상세등록부 반영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목록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함. **산업발전부문 상쇄제도 외부사업에 해당하는 방법론은 총 13건

번호	구분	방법론명
1	01A-001-Ver01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2	01B-001-Ver01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계통 연계 사업의 방법론
3	01B-003-Ver01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4	01B-004-Ver01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자가 사용 사업의 방법론
5	02B-001-Ver01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열에너지 공급을 통한 수용가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
6	03A-001-Ver01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7	03A-002-Ver01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8	03A-003-Ver01	전력절감설비 설치사업의 방법론
9	03A-004-Ver01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
10	03A-006-Ver01	고효율 도로조명 설치 사업의 방법론
11	03A-008-Ver01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를 통한 전력생산 및 계통연계 사업의 방법론
12	03A-013-Ver01	주거용 시설의 심야 전기보일러에서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 사업의 방법론
13	11B-001-Ver01	가스절연개폐장치 검사용 SF6 회수-정제 및 재사용을 통한 SF6 감축사업의 방법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상쇄제도의 **“참여”** 는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에 초석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031-260-4503, 4509